

「2021년도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안내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종사자간의 협업 모듈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2021년도 주얼리 협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주얼리 관련 업체(단체)가 직접 공공성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실행함으로써 산업 내 협업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도모
 - 단체 및 업체 간의 사업 기획을 통해 협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주얼리 협업화를 통한 동아리 활성화 및 협동조합 기반 구축
- (지원대상) 주얼리 관련 단체, 주얼리 관련 업체 등 3개 단체(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서울시 소재의 주얼리 관련 단체 및 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총 지원규모 (부가세포함)
기획공모	① 주얼리 소상공인 근로자 환경개선	총 50,000천원 내외 (사업별 20,000천원~50,000천원)
	② 주얼리 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및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국제 규모의 공모전	총 43,000천원 내외 (사업별 8,000천원~30,000천원)
자유공모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사업	총 15,200천원 내외 (사업별 5,000천원~15,200천원)

※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제안 범위와 예산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제안과 예산책정은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주요내용	비 고
사업 공고 및 접수	4.23.(금) ~ 5.10.(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이메일 : sjc@seouljewelry.or.kr)	
선정평가 (선정위원회)	5.12.(수) ~ 5.14.(금)	대면평가로 진행 (발표방식은 PPT, 유인물 등)	필요시 온라인 진행
우선순위 대상자 발표	5.14(금)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 발표(홈페이지) 및 협의	
보완 및 협약체결	5.25(화) ~ 6.03(목)	협상 후 예산 내 협약체결, 협업지원사업 진행	
사업운영	협약일 ~ 11.30(화)	사업진행 및 사업비 지급 (선금, 잔금 등)	
최종 결과보고	11.30(화)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일정은 운영에 따라 사전 협의 없이 변경·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3개 이상 단체(업체)의 제안 아이디어 비용 지원

- “기획공모” 는 지정된 내용을 제안하는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운영

ex) 우수디자인 발굴을 위한 국제공모전 or 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에서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한 업그레이드 형 등으로 제안 가능

ex)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음.

- “자유공모” 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제안하는 공공성 사업으로 운영

ex) 문화, 교육, 환경, 지역문제 해결, 이웃 간 소통과 화합 등을 통해 주얼리 관련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성, 공익성, 지속성 등을 갖춘 사업

ex) 공공성의 성격이 아닌 특정집단, 개인 회사의 제품개발 또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 등은 제한

공공성 사업이란? 한 개인이나 지정된 단체 회원사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사업으로, 사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주얼리 협업지원사업은 ‘주관업체’, ‘참여업체’ 로 구분하며 주관업체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가 가능한 사업자(단체 포함)로 한함

※ 응모 제한

- ①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② 동일사업으로 회계처리 기준상, 타 기관의 중복지원
- ③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주제, 사회·윤리적 물의를 일으키는 주제, 저작권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주제
- ④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제안사업
- ⑤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등

□ (사업 제안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에 따라 제안
- 선정된 사업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진행됨을 반드시 명시하고 로고 등을 포함하여 함께 홍보 진행
- 선정된 사업과의 수의계약이 어려운 경우, 실행되는 비용에 대해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직접 회계처리 지원이 가능
- 사업 집행 및 예산 처리 등은 협약서 및 서울특별시 회계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자료에 한하며 그 외에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 필요
 - ※ 주관업체, 참여업체 등 자사의 직접적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불인정
- 본 사업의 저작권은 서울시 및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 있어 수익사업은 제한되며, 동일사업으로 회계처리기준상 타기관의 중복지원 불가

3

선정 및 평가

□ (선정위원회 개최) 2021 주얼리 협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주얼리 업계·학계 및 신사업운영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위 원 장 : 평가당일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평가 참여)
- 평가위원 : 총 5명 이내

□ (대면평가) 15분 이내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발표자는 주관업체의 대표자(단체의 경우 실무자)가 원칙이며, 그 외의 경우는 신청서류만으로 평가 (빔 프로젝트 사용이 가능하며, 발표방식은 제한 없음)
- 부득이 대표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 소속직원 확인서류를 제출에 한해 대표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음
 - ※ 소속직원확인서류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확인서 무료발급 가능)

<대면평가 대상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참석자는 주관업체의 대표자와 실무자로 한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주시기 바라며, 발표 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
-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이 불가하며, 사전에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해주세요.
- ④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주세요.

□ (심사기준) 사업의 적절성(30%) / 사업계획(50%) / 기여도(20%)

- 기획공모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심사 지표	배 점	
사업 적절성(30)	사업의 필요성	- 기획주제와 맞는 계획인가?	15	30
	협업여부	- 참여업체별 협업 구성은 적절한가?	15	
사업 계획(50)	대표자의 적극성	- 총괄 대표자가 적극적인가? (대응 투자 등)	10	50
	예산의 적절성	- 예산 계획이 적절한가?	10	
		- 사업비, 기타 항목 편성의 적절한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15	
사업의 가능성	- 운영계획이 구체적인가?(홍보 등)	15		
기여도(20)	산업 발전	- 주얼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가?	10	20
	신시장 개척	-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가?	10	
합 계			100	

- 자유공모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심사 지표	배 점	
사업 적절성(30)	사업의 공공성	-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사업인가?	15	30
	협업의 필요성	- 협업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가?	15	
사업 계획(50)	대표자의 적극성	- 총괄 대표자가 적극적인가? (발표 및 참석여부)	10	50
	예산의 적절성	- 예산 계획이 적절한가?	15	
		- 사업비, 기타 항목 편성이 적절한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15	
사업의 가능성	- 본 사업의 결과가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기여도(20)	운영계획의 혁신성	- 제안한 계획이 혁신적인가?	10	20
	일자리창출	- 주얼리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가?	10	
합 계			100	

□ (제출서류)

- ① (서식1) 2021년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제안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② 참여업체(인)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③ (붙임1) 주얼리인 지지 서명부 1부.
- ④ (붙임2) 참여업체(인)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⑤ 개인정보 동의 및 지원결과에 대한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동의서 각 1부.

□ (유의사항)

- ① 아래 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안 신청서 및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개인, 단체 및 업체
 - ※ 협약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인감증명서,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 ② 사업계획 및 예산 협약에 따라 제안내용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과도한 범위나 예산책정은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③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제외대상 또는 불충분한사항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④ 전년대비 운영방식,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기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1.04.23.(금) ~ 05.10.(월) 이메일 접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압축하여 아래 이메일로 접수하여 메일제목은 “2021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신청서_주관업체명” 으로 표기
- 이 메 일 : sjc@seouljewelry.or.kr
- ※ 신청 마감일에는 메일 폭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감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메일접수를 하셨더라도 선정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산업지원팀(02-764-9051 내선0)

첨부 : 2021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회계처리기준 1부. 끝.

2021 주얼리 협업지원사업 회계기준

- (지출시 증빙서류) 견적서, 비교견적서(타 업체), 전자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통장사본 포함) or 기업용 신용카드 영수증 or 기업용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사진
- (유의사항) 결산 후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를 반환할 수 있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운영비	교통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통비 ※ 거리별 교통비 운임만 해당(철도 일반석,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
	보험료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사 보험료
	운반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비, 택배비, 퀵서비스
	교육훈련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사료(별첨 가 참조), 원고료(별첨 나 참조)
	인쇄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 복사비, 출력비
	소모품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소모성비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
	수수료, 대여 비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은행송금수수료, 도메인등록수수료, 장소대여료
	광고 선전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광고제작, 팸플릿, 신문, 라디오 광고, 전시회
	회의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의·선정평가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회의 식사비: 1인당 8,000원 이내 (회의록 필수) ※ 선정평가, 운영위원회 : 2시간 이상은 150,000원, 2시간 미만은 100,000원 이내 가능)
	잡비	계정과목 이외의 비용 (※ 센터와 협의 후 진행)

※ 불인정항목

- 환급성이 있는 기자재(ex 금, 다이아몬드 등)
- 장비(소프트웨어 포함)구입, 도서구입, 고정 인건비 등
- 주관업체, 참여업체 등 자사의 직접적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지급 불가

가

강사료 지급기준

[서울인재개발원 지급 기준(20.10.1)]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전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	120,000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	80,000	
정보화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 강사 1,2 이외의 강사 	80,000	70,000	
보 조 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이 러 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 이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20.10.1시행)에 따라 운영

나

원고료 지급기준

[서울인재개발원 지급 기준(20.10.1)]

- (지급대상)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 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